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65
----------	-----

2011년 7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1년 6월 15일
- 다. 상정일자 :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 6월 28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서강석)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키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대상은 총 5건으로 취득 4건, 처분 1건임.
 - 건물신축 3건에 대한 세부 내역은
 - ① 세계적 수준의 복합문화 공간 확보를 위해 용산구 이촌동 (302-6 일대) 에 한강예술섬(99,102㎡) 건립
 - ② 낙후된 서남권 지역의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구로구 고척동(63-6 일대)에 서남권 돔 야구장 (72,457.6㎡) 신축
 - ③ 노인 100만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개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작구 신대방동(395번지)에 서남권어르신행복타운(46,552㎡) 신축
 - 토지 및 건물 매입 1건은
 - ① 대학로 공연예술진흥을 위한 공연예술종합지원센터 조성·운영을 위하여 종로구 동숭동(1-117 외 1필지)에 위치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토지(1,132.8㎡) 및 건물(2,101.34㎡) 매입
- 처분 1건은 시유일반재산 토지 매각건으로
 - ① 강동구 천호동 소재(447-12 외 1필지) 시유 일반재산(511㎡)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내용임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계상재산

○ 취득(4건)

- 건물신축 (3건) : 건물 218,111.6 m^2
- 건물 및 토지 매입(1건) : 건물 2,101.3 m^2 토지 1,132.8 m^2

○ 처분(1건)

- 매각 (1건) : 토지 511 m^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박 용 훈)

가. 취득 및 처분 총괄 내역

○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대상은 총 5건으로 취득 4건 처분 1건임.

○ 본 변경계획안은

- ① 대학로 공연예술진흥을 위한 공연예술종합지원센터 조성·운영을 위하여 종로구 동숭동(1-117 외 1필지)에 위치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지 및 건물 매입(취득재산목록 4번)
- ② 강동구 천호동 소재(447-12 외 1필지) 사유 일반재산(511 m^2)를 수의계약으로 매각(처분재산목록 1번)하는 내용과

○ 지난 227회 임시회에서 의회 의결(2010년12월29일)을 얻은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서 삭제되었던

- ① 세계적 수준의 복합문화 공간 확보를 위해 용산구 이촌동(302-6 일대)에 한강예술섬(99,102 m^2) 건립 (취득재산목록 1번),
- ② 낙후된 서남권 지역의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구로구 고척동(63-6 일대)에 서남권 돔 야구장 (72,457.6 m^2) 신축(취득재산목록 2번).
- ③ 노인 100만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개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작구 신대방동(395번지)에 서남권어 르신행복타운(46,552 m^2) 신축(취득재산목록 3번)임.

나. 취득 및 처분재산 내용검토

① 한강예술섬 신축(취득재산 목록 1번)

- 본 사안은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노들섬(구 중지도)에 다목적 문화예술공간 및 문화예술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6,331억원의 건축비(설계/감리비 408억원, 공사비 5,909억원, 부대비 14억원)를 투자하여 2016년까지 복합문화시설(‘한강예술섬’)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 사업개요 〉

- 위 치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 (노들섬) 일대
- 건물연면적 : 99,102㎡
- 시설규모 : 지하2층/지상8층

심포니홀	오페라극장	다목적극장	야외시설	기타시설
2,100석 (고정석 1,860석, 코러스 240석),	1,751석 (고정석 1,511석, 가변석 240석)	400석 (가변석)	야외음악공원 생태노을공원 조각 공원	미술 갤러리 조망 카페 아트숍 등

- 사업비 : 673,508백만원
(건축비 6,331억원+토지매입 404억원(274억원 기투자, 신규 매입 130억원))

- 본 사안은 지난 제226회 임시회(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2010.10.13)에서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면서, ‘한강예술섬’ 조성 관련 필요한 잔여 토지(5,020.5㎡) 매입의 건은 관리계획에 포함 의결되었으나, 신축의 건은 “총사업규모 및 사업기간과 재원확보방안 등 연차별 투자계획 적정성 등”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제된 바 있으며,
- 제227회 정례회(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2010.12.20)에서는 민간자본 유치계획(2000억원) 등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해 준공 시점을 2014년 4월에서 2016년 6월로 연기하여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재원확보방안 마련과 교통접근성 개선 및 중장기 사업기간으로의 조정과 총사업비 규모 및 연차별 투자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삭제된바 있음.
- 이에 사업기간을 1년 연장(준공 : 2016. 6. → 2017. 6.)하고, 2000억원의 민간자본 확보 계획을 수정(국비: 1,000억원 + 민간비: 1,000억원)하여 금번 변경계획안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음.
- 국비(1,000억원)는 6, 7월 경 협의를 통해 국비지원 MOU를 체결하고 중앙투융자심사 의뢰 및 심사를 거쳐 확보할 계획이며, 민간비(1,000억원)는 시설명칭사용권(네이밍 스폰서링: naming sponsoring) 등 예술섬 전역의 공간을 기부 대상으로 공모(절차 : 기업설명회 개최(네이밍 등)→개별 기업 접촉→후원조건 협의→후원 약정)를 통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으로 있음.

「제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시 연차별 투자계획(제226회 임시회)

(단위 : 억원)

주요사업	계	기투자액 (2009까지)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강예술섬 건립	6,735	458	209	1,030	2,001	2,282	755



「제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연차별 투자계획(제227회 정례회)

(단위 : 억원)

구분	총계	기투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09이 전	2010						
계	6,605	535	134	406	975	1,025	1,330	1,380	820
시비	4,605	535	134	406	675	625	830	880	520
민간비	2,000	-	-	-	300	400	500	500	300



「제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연차별 투자계획(제231회 정례회)

(단위 : 억원)

구분	총계	기투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6,605	554	120	775	955	1,075	1,080	1,046	1,000
시비	4,605	554	120	675	655	675	680	646	600
민간비	1,000	-	-	100	100	200	200	200	200
국비	1,000	-	-	-	200	200	200	200	200

※ 총금액 6,605억원은 총 사업비 6,735억원에서 국유지 매입비 130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국유지 매입비는 향후 사유지와의 상호교환 예정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제외

○ 당초 전액 자체 재원으로 사업 시행을 계획하여 자체 투자심사는 완료하였으나, 의존재원(국비, 민자, 기타 재원)의 증가로 재원조달계획이 변경될 경우 재심사(중앙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민간자본 유치 계획 수립과 함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중앙투·융자심사 결과 반영을 통한 예산편성 등 「지방재정법」 상 예산편성 사전이행절차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당초 전액자체재원으로 심사 후 국비, 민자, 기타(지방채, 기금, 시·도비 등) 재원으로 재원조달 계획 변경 사업은 재심사를 하고 재심사기관은 중앙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매뉴얼」 11쪽).

※ 국고 지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고지원 협약 체결을 위한 장관 면담 등 협의 중에 있으며 중앙투자심사 신청은 8월 10일 예정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37조(재정투·용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용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예산의 편성)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용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비)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용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또한 네이밍스폰서링 등 기부를 통한 민간자본의 확충계획은 자발적 기부 문화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으나,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관계 법률 취지에 부합되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취지 >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등 단체와 국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적인 모집행위로 비추어질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조세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근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허용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임(「기부금품 모집제도 업무편람」(행정안전부) 제37쪽).
- 아울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 할 수 없음
 - ※ 다른 법령에 규정 예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등

㉒ 구로구 고척동 서남권 돛야구장 신축(변경심의)(취득재산 목록 2번)

- 본 사안은 당초 사업비 1,058억원의 돛야구장(구로구 고척동 소재) 신축 계획이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계획」으로 의회의결(2009. 9. 8)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중 당초 계획 및 설계시 반영되지 않았던 수익시설 설치(주차장 공간을 수익시설 유치를 위한 공간으로 하고, 주차장을 그라운드 지하에 설치)를 위한 예산 275억원과 친환경에너지절약건축물의 등급 상향(3등급→1등급)을 위한 예산 68억원 등 총 343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투자(총사업비 1,401억원)하기 위한 것임.
- 본 안건은 지난 제226회 임시회(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2010.10.13)와 제227회 정례회(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2010.12.20)에서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면서, 수익시설 공간 확보의 경우는 수익시설 유치계획 및 그라운드 지하에 들어설 주차장 계획의 적정성, 친환경에너지절약건축물 1등급 건물 변경에 따른 추가 투자(74억원)에 대해서는 투자 대비 연간 에너지 절감(집행부 추산: 연간 2억 4천만원) 등 운영비 절감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제된바 있음.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내역 및 의회 의결 경위 〉

- 동대문야구장 대체구장 부지(구로구 고척동 내) 매입
 - ↳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2007. 7. 9 의회 의결)
 - 하프돔 야구장(연면적 16,879㎡) 등 복합문화체육시설을 건립
 - ↳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2008. 12. 6 의회 의결)
 - 하프돔에서 완전 돔구장 사업이 변경(사업비 409억원 → 1,058억원)
 - ↳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2009. 9. 8 의회 의결)
 - 수익시설 설치공간 확보 및 에너지절약형 건물 건축 계획변경(사업비 1,058억원→1,407억원)
 - ↳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26회 임시회(2010. 10. 13) 부결(삭제))
 - ↳ “2011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227회 정례회(2010. 12. 20) 부결(삭제))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면적 및 기준가격(건축비)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의회의 재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집행부에서는 수익시설 설치의 당초 계획안으로 추진하되 업종을 조정하고,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의 설계변경은 5억5천9백만원이 감액된 예산(6,815백만원)으로 추진하며, 사업기간을 2013년 12월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본 변경계획안을 다시 제출한 것임.

【사업계획 변경 개요】

- 수익시설 설치 : 당초 계획(안)으로 추진하되 업종 조정
 - 수익시설규모 및 면적은 당초계획대로 추진하되, 민원(시의회 u-신문고 민원접수)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사우나(스파)시설은 제외 하고 키즈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위주로 조정 ⇒ 최종 업종 선정은 향후 시장조사 및 지문회의 개최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결정.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물』 변경(안) 수정 추진
 - 당초 계획(안)에서 ▽559백만원 감액된 예산(6,815백만원)으로 추진
 - 전기분야중 조명기기조정, 친환경인증분야에서 친환경제품 적용종류 최소화하여 조정 추진
- 사업기간 변경 : 2009. 2. ~ 2012. 12 ⇒ 2013. 12(1년 연장)
 -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교통대책추진 사업기간 연장 필요
 - 사업기간 변경 및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변경

○ 돔 야구장 내 수익시설 설치로 기존 투자심사 조건인 운영수지 개선(운영 및 유지관리비 재원 확충)과 에너지 효율등급 상향에 따른 유지관리비 절감 등을 기대하고 있으나, 향후 지역상권 분석을 통한 적절한 수익시설의 유치 여부 및 친환경에너지절약건축물 추진이 현 재정여건과 향후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적절한 투자인지 등의 종합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라 하겠음.

〈 사업 변경 개요 〉

구 분	「2009년 제5차 공유재산변경계획안」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26회 임시회) ⇒ 부결(삭제)	「2011년 제1차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제227회 정례회) ⇒ 부결(삭제)	본 변경계획안	비 고	
위 치	구로구 고척동 63-6외 10필지					
건축개요	· 부지 : 57,261㎡ · 지하2/지상4 · 관람석수 22,258석 · 완전 돔구장					
연면적	58,069㎡	72,457㎡ (· 주차면적: 4,260㎡, · 수익시설면적: 6,538㎡ · 수익시설에 따른 공유면적: 3,590㎡ 증가)			연면적 증 14,388㎡	
주차대수	279대	359대			증 80대	
수익 시설	유치 시설	-	키즈, 사우나(스파)시 설 설치	키즈, 사우나(스파)시 설 설치 도시계획심의통과 (조건부-사회약자 배 려할 것)	키즈시설 중심의 근린생 활시설(판매 등) 설치 ※자문단 구성하여 최종결정	사우나 시설 제외
	추가 예산	-	274억원			
에너 지 시 설	에너 지	나 등급단열/ 칼라복층유리 절약제어방식 일반 형광등기구 등	가 등급단열/ 로이복층유리 고효율 인증적용 형광등→LED교체(1700개)	LED조명기구 조정 (810개로 선별·우 선적용)		
	신재 생	지열 30RT, 태양 광 추가75Kw	태양광 추가(합 140Kw)			
	친환 경	우수, 중수시설 등 적용	환경인증 제품사용, 조명에너지 절약 시설 추가	친환경인증제품 적 용 종류 최소화(GR 마크제외5종)		
	추가 예산	-	74억원		68억원(감 6억원)	
사 업 비 (백만원)	105,822	140,664		140,058(감 6억원)		
사업기간	2009. 2. ~ 2011. 12.	2009. 2 ~ 2012. 12.		2009. 2. ~ 2013. 12.	(사업기 간 1년연장)	

③ 서남권 어르신행복타운 신축(취득재산 목록 3번)

- 본 사안은 동작구 신대방동(395번지)에 위치한 보라매공원내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서남권 어르신 행복타운(이하 '서남권 행복타운')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 제226회 임시회와 제227회 정례회에서 심사결과 관리계획에서 삭제된 바 있음.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과정

회기 (의결일)	안건명	사업명	의결내용	비고
제226회 임시회 (2010.10.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남권어르신 행 복타운 신축사업	삭제함	재원투자대비 효과성 검증과 시설규모의 적정성 및 어르신의 관점에서 본 접근성과 수요 를 고려한 자치구별 노인복 지시설 추가설치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한 검토 필요
제227회 정례회 (2010.10.20)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서남권어르신 행 복타운 신축사업	삭제함	

▶ 취득대상 서남권 행복타운 현황

권역	위 치	대지면적	건축규모		사업비 (억원)	운영프로그램	
			층수	연면적		(권역별특화)	기본
서남권	동작구 신대방동 395 (보라매공원)	21,000㎡ (6,353평)	7/3	46,552㎡ (14,407평)	1,153	노인질환 전문 연구 건강의료 담당	여가 체육 (공면 체육수영사우나잔) 의료·간강기타

※ 제226회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서남권 행복타운과 비교할 때 연면적(17,144평→14,407평)과 사업비(1,414억원→1,153억원)가 조정되어 제227회 정례회에 제출되었음.

- 제226회(임시회)에는 도심권과 서남권 어르신 행복타운 사업이 제출된 바, '노인정책 개발과 운영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담당하는 도심권 9988어르신 행복타운 사업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으나, 제226회(임시회)와 제227회(정례회)에 제출된 서남권 어르신 행복타운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어르신의 수요 및 접근성에 대한 검토 부족, 자치구 종합노인복지관 추가신설·기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을 위한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활용' 등의 이유로 삭제되었음.
- 서남권 어르신 행복타운 사업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어르신의 수요 원인과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

- 의회심의 과정에서 어르신의 노인복지시설 방문 때 이용하는 주된 교통수단이 '도보(63%)'라고 답했다는 점에서 동작구 보라매공원내 어르신행복타운을 설치할 경우 관악구·금천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시설 이용을 위한 접근성에 문제가 있음.
- 어르신이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주된 동기가 '말뱃' 및 '친구와의 교우관계' 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행복타운을 어르신의 주거지 또는 활동 근거지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점대형 노인복지시설로서 설립하는 방침은 어르신의 수요원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음.

② 한정된 재원을 고려한 종합노인복지관 추가 신설방안·기존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 지원 확대 방안 등과의 비교 검토 필요성 제기

※ 광진노인종합복지관(3,430.54㎡; 지하2층, 지상4층 규모)과 유사한 규모의 시설 예상 건립비는 약 77억8천만원(㎡당 2,242천원 기준)으로서, 금번 서남권행복타운에 소요되는 예산(1,153억원)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경우 약15개 정도를 신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서남권 어르신 행복타운 사업에 대해 수차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하여 다각도의 검토와 지적이 있었는 바, 이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 및 검토가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④ 대학로 한국예술단체 총연합회 부지 및 건물 매입(취득재산 목록 4번)

○ 본 재산취득의 건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방이전(전남 나주방침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유의 한국예술총연합회(이하 '한예총') 회관건물 및 부지를 매입·리모델링하여 공연예술종합지원센터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 취득개요

- ①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17, 1-119
- ② 부지 : 1,132.8㎡(1-117 : 733.2㎡, 1-119 : 399.6㎡)
- ③ 연면적 : 2,101.34㎡(1-117 : 2,068.16㎡ 지하1층/지상5층, 1-119 : 33.18㎡)
- ④ 소유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에서 사용중)
- ⑤ 소요예산 : 34,220백만원(매입비 30,000백만원, 리모델링비 등 4,220백만원)

※ 한예총 회관에는 '국악협회, 문인협회, 무용협회, 연극협회, 영화인협회, 음악협회, 사진작가협회, 건축가협회, 연예·예술인협회가 무상임차하여 상주하고 있음.

▶ 추진경위

- ① '10. 3.18 지방이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종전부동산 매입의견 조회(국토해양부)
- ② '10. 4. 7 우리시 종전부동산 매입의견 국토해양부 제출
- ③ '10. 6.22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처리계획 확정 통보('11년 서울시에 매각)
- ④ '10.12.31 매입계획서 제출('12년부터 3년간에 걸쳐 예산 확보하여 매입)
- ⑤ '11. 1.12 이전기관 의견 알림-국토해양부('11년 예산 미확보시 민간매각 예정)

가. 대학로 문화지구에 대한 개괄적 현황

- 집행부는 대학로를 문화지구로 지정(2004년)한 바, 공연연문화공간이라는 정체성과 연극예술의 산실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로 지역의 문화활동을 촉진시키는 한편 문화공간의 기반이 되는 공연장 및 문화시설을 보호·육성 하고, 공연활동에 위해가 되는 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음.

▶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 범위

항목	주요내용	각 도시계획 범위
면적	446,569 ^m ²	
주요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쪽 : 창경궁로와 동소문로 (도로여건상 북쪽으로는 도심과 동북권을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 · 남쪽 : 율곡로(남쪽으로는 종로와 동대문 지역이 연결) 	
행정구역	종로구	
지구단위 계획	수립 : 2006년 9월 총 면적 : 477,346 ^m ²	
비고	· 문화지구범위와 지구단위계획 구역의불일치	

※ 문화지구로 지정된 배경에는 1990년 정부(소관부처: 문화부)의 ‘문화의 거리’ 지정 정책, 2000년 종로구의 ‘차 없는 거리’ 등 잇따른 대학로 관리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상업화 및 유흥소비화 공간을 유발하였다는 비판 속에 대학로의 핵심지역인 동숭동 소재 건축물의 4/5가 유흥 및 여가소비관련업종(노래방, 비디오방 등)으로 채워지는 현상으로 인해 대학로의 문화적 이미지와 거리가 먼 가로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임.

- 문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권장시설 보호 및 육성, 업종 및 용도규제, 행위규제, 공연활성화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계획이 집행되었음.

○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개선 종합지원계획(2011.3)」의 일환으로 한예총 회관 부지 및 건물매입을 통해 '대학로 공연예술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개선 종합지원계획」에 의거하여 8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대학로 공연예술발전협의회(가칭), 대학로 공연예술종합지원센터, 공연시설 개선지원,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 아시아 연극수도프로젝트, 연극거리 조성, 문화지구내 권장시설 조세감면 기한연장 및 국제감면제도 도입, 문화지구 관리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임.

▶ 관리계획 중 공연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 추진

항 목	내 용
공공 공연장 건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의해 『대학로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
소공연장 시설개선사업	2002년부터 (사)한국연극협회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참여하여 추진
소공연장 안전시설 개선사업	〈예술의 전당〉 화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재원을 조성, (사)한국연극협회를 통해 추진한 사업 (2008년 처음으로 실시)
공공연습실 건립	공공용도 연습실 확보차원에서 〈서울문화재단〉은 2005년 동숭동 1-43번지내에 「대학로연습실(6개실)」을 개관
공연안내시스템 확보	〈전국소공연장연합회〉는 2008년 3월 가로등 내 원통형의 홍보게시판 설치 마로니에 공원에서 혜화로터리까지 주간선도로 양측 가로등에 20개씩 총40개를 설치가로등 1개당 부착 가능한 포스터는 9개로 총 360개 부착 가능(부착비용은1일 6,000원)
공연장 이정표 설치	2006년 7월부터 8월까지 공연장을 포함한 주요 문화시설 이정표 설치
「좋은공연안내소」 설치	〈전국소공연장연합회〉는 2004년부터 혜화역 2번 출구, 마로니에 공원 입구내 컨테이너박스의 「좋은공연안내소」를 설치·운영
「서울연극센터」 개관	2007년 11월 종로구와 서울시는 〈혜화동주민자치센터〉를 이전하고 동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서울연극센터」 개관
안내책자 발행	종로구청은 2006년 11월 「대학로」라는 안내책자 발행
대학로 웹사이트 운영	〈서울연극센터〉 www.e-stc.co.kr 〈서울연극협회〉 www.bizcul.co.kr

▶ 공연예술 종합 지원센터 조성(안) 현황

층 별	면 적(m ²)	용 도
계	2,068.16	
지하 1 층	383.02	다목적발표장, 세미나실(공연기획 및 회의실)
지상 1 층	312.46	예술관광지원센터
지상 2 층	343.17	공연연습실(2실)
지상 3 층	343.17	공연연습실(2실)
지상 4 층	343.17	공연연습실(2실)
지상 5 층	343.17	시민,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교육장), 공연 홍보/ 마케팅 등 분야별 경영지원컨설팅 사무실

※ 위탁체와 조성 자문위원회 등 통해 세부계획 확정

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 집행부는 사업 필요성으로써 '소극장 중심의 시설운영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제작이 어렵고, 연습공간이 부족하여 극장에서 연습과 공연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실정'을 주된 사유로 제시하고 있음.

▶ 대학로 공연장 현황

운영주체별			규 모 별				
계	공공공연장	민간공연장	계	종합공연장 (1000석~)	일반공연장 (300~999석)	소공연장 (300석 미만)	미등록공연장 (100석 미만)
134	6	128	134	0	9	52	73

- 그러나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연장의 3분의2가 지하소극장이고 미등록공연장의 경우는 대부분 연극 공연에 적합한 최소한의 환경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바, 이는 오히려 공공 공연장의 추가 확충 등 (제대로 된) 공연장 확보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보임.

※ 수준 높은 연극공연에 대한 수요를 감안한 기존 공연장의 시설 개선과 추가적인 신규 공연장 확보를 위한 민간 자본 유치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시급하다고 사료됨.

- 집행부는 공연예술종합지원센터 1층에 예술관광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업체 선정을 통해 수립하겠다는 방침이지만, 2007년 (종전)혜화동주민자치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한 '서울연극센터'와의 기능상 중복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인터넷 및 각종 소셜네트워크(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주요 연극공연에 대한 평가와 선호도 등의 정보가 교류·전파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는 바, 공연예술종합지원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 구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외에도 시민에 대한 홍보 등 안내를 맡고 있는 「좋은공연안내소(한국소극장협회 운영, 혜화역 2번 출구)」와의 역할 중첩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사업의 주목적이 (관객이 아닌) 연극인의 공연 연습실 확보라면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주변건물보다 시세가 높다고 평가되는 한예총 건물 및 부지의 매입(예상가격 약300억원; 한국감정원 가감정 결과; 세부적인 가감정 내용은 한예총에서 자료제출 거부함)보다는 서울연극센터와 서울문화재단의 '대학로 연습실'을 증·개축하는 등의 방안을 예산 대비 효율성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다. 한예총 건물 및 부지 계약 방식에 대한 검토

- 집행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유인 한예총 건물 및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무상임대중인 한예총의 퇴거 완료후 매입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방침임.

※ 한예총은 양천구 목동 소재 '예술인센터 건립사업(지하 5층, 지상20층; 연면적 41,732㎡)'을 1996년부터 국고보조 사업(약165억원)으로 추진하였으나,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1999년 이후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100억원과 금융기관의 대출금 450억원으로 공사를 재개하여 2011년 7월 완공예정인 것으로 있음.

- 그러나 대출금 반환 등의 문제로 인해 동 예술인센터가 당초의 목표대로 예술창작공간으로 사용될지 또는 임대 사업공간으로 활용될지는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바, 집행부는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한예총의 예술인센터로의 퇴거를 확인한 뒤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함.

- 그러나 시민의 정치적 대표기관이라는 의회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할 때, 집행부는 행정계획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행정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에 안전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당연성과 현재의 한예총 부지 및 건물 매입은 국토해양부의 방침에 따라 금년 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종합적 검토

- 서울시립대학교가 수행한 연구용역결과(서울시 문화지구 관리개선 마스터 플랜 수립연구, 2010년 12월)에서는 6가지의 활성화 방안¹⁾을 제시한 바, 그 중 공연콘텐츠의 다양화 추구하고 문화행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기금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1)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운영 개선 방향으로서 권장시설 유형의 재분류, 업종 및 용도제한 개선, 문화공간 관리개선, 권장시설 입지여건 개선, 기금조성, 협의체 구성을 제시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창작공연작품 제작지원금 축소 등 제작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이하 '문화기금') 확대 조성·운영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임.

▶ 정부의 창작공연작품 제작지원금 현황

- 2010 문화예술진흥기금 대학로 지원예산 : 57백만원
 - 대학로 소재 연극단체(소극장) 지원 : 6개소 33백만원
 - 2010 대학로소극장페스티벌 지원(한국소극장협회) : 24백만원

○ 그러나 연구용역결과에 따르면 2010년 12월말까지 문화기금 모금을 위한 출연단체는 서울시가 유일하다고 하며, 이마저도 2003년 총 9억 8천만원을 출연한 이후 추가 출연도 없어, 문화기금 잔액은 총 1억 7천 6백만원에 불과한 실정임.

▶ 문화기금 재원조성 방안 및 활용계획

① 재원조성

- ㉠ 『종로구 문화지구 육성기금』을 확대하여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민간기업 등 공동출연, 기금 조성목표액을 총 300억원으로, 2012년부터 출연
- ㉡ 대학로 공연, 축제 개최를 통한 관람료 수입금 중 일정률을 발전기금으로 적립
- ※ 수입금의 경우 익년도 적립기금 이자와 함께 사업비로 사용

② 기금운용 및 활용

- ㉠ 기금운용 : 대학로 공연예술발전협의회
- ㉡ 기금활용 : 대학로 대표공연예술작품 발굴 및 육성지원, 대표축제 운영
민간건축물내 공연장 임대 및 공연시설 개보수 개선지원, 대관료 지원 등

○ 집행부는 민간기업 등 공동출연 등의 방식으로 문화기금(기금 조성목표액 총 3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종전의 기금 출연 실적 등을 고려할 때 문화기금 재원조성의 가능성 등이 의문시되는 바, 한예총 건물 및 부지 매입 예산사업(340억원)과 비교한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신중한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보임.

○ 종합적으로, 한예총 건물 및 부지 매입 예산(340억원) 사업의 규모와 타당성, 중복투자 여부, 한정된 재원, 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성 등을 다각도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㉔ 시유지 수의계약 처분(처분재산 목록 1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5월 6일 세부개발계획 결정 고시된 천호지구 D2특별계획구역내 시유재산에 대하여 인접지 소유자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건임.

▶ 재산현황

(단위 : m², 원)

재산의 표시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전체	매수신청	단위면적(m ²)당 산정액	총액
합 계		511.0	511.0		2,789,680,000
강동구 천호동 447-12	학교용지	482.0	482.0	5,600,000	2,699,200,000
강동구 천호동 154-22	대지	29.0	29.0	3,120,000	90,480,000

- 본 건 시유지는 학교법인 현강학원에 유상으로 대부되어 왔으나, 1996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에 따른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이 해제(2007년 4월)되었고, 학교법인(현강여자정보고등학교)의 부지 매각에 따른 학교 이전(移轉)(2009년 2월) 이후 현재는 나대지 상태임.

▶ 추진경위

- 1996.08.0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16호)
- 2001.06.05. 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1-178호)
- 2007.04.05. D2특별계획구역 지정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07-85호)
- 2010.05.06. 세부개발계획 결정(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66호)
- 2011.01.21. 매수신청서 접수

- 사업부지 내 편입토지 21필지 중 시유지(2필지) 및 국유지(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18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매수신청자((주)포유)가 D2특별계획구역에 공동주택 2개동(지하4층/지상41층),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1개동(지하4층/지상20층)의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시유지 매각 신청을 한 것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 시유재산 매각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매각대금은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할 계획²⁾이라 함.

▶ 매각절차 도표

매수신청서 접수 → 매각계획 수립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처분적정성 심의 → 공유재산관리계획반영 → 감정평가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가격적정성 심의 → 계약 및 대금수납 → 소유권 이전

- 검토하건데 천호지구 D2특별계획구역내 시유지가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로 둘러싸여 있을 뿐 아니라 부지 형태 등을 고려할 때 독립적 활용이 어렵다는 점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원활한 지역개발 및 시유지 매각에 의한 세외 수입확보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대학로 한예총 회관의 건물구조가 연습장 시설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주변에 설립된 “연극센터”와의 기능상 중복성 및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답변)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사업추진에 대한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어르신행복타운 사업보다는 의회에서 예산증액 의결한 저소득노인급식제공 사업을 비롯한 경로당 활성화사업, 노인문화 활성화 사업,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사업 등을 조속히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됨.

(답변) 의원님이 적시하신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7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함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수정안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이 요망되는 “**한강예술섬 건립사업**” 및 재원투자규모의 적정성과 연구센터와의 중복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과 재원투자대비 효과성 검증과 시설규모의 적정성 및 어르신에 대한 접근성과 수요를 고려한 자치구별 노인복지시설 추가설치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는 “**서남권 어르신 행복타운 신축사업**”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 제출안대로 함.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 타 사 항 : 없 음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65
----------	-----------

2011년 12월 28일
행정 자 치 위 원 회

1. 수정이유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이 요망되는 “**한강예술섬 건립사업**” 및 재원투자규모의 적정성과 연극센터와의 중복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는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과 재원투자대비 효과성 검증과 시설규모의 적정성 및 어르신의 관점에서 본 접근성과 수요를 고려한 자치구별 노인복지시설 추가설치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는 “**서남권 어르신 행복타운 신축사업**”을 각각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용산구 이촌동(302-6 일대) 한강예술섬(99,102㎡)”과 “동작구 신대방동(395번지) 서남권어르신행복타운(46,552㎡)” 및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토지(1,132.8㎡) 및 건물(2,101.34㎡) 매입”의 건을 삭제함.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의결주문 중 “세계적 수준의 복합문화 공간 확보를 위해 용산구 이촌동 (302-6 일대) 에 한강예술섬 (99,102 m^2) 건립과 “, 노인 100만 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개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에 서남권어르신행복타운(46,552 m^2) 신축, 대학로 공연예술진흥을 위한 공연예술종합지원센터 조성·운영을 위하여 종로구 동승동(1-117 외 1필지)에 위치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토지(1,132.8 m^2) 및 건물(2,101.34 m^2)을 매입”를 삭제한다.

안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재산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재산

○ 취 득(1건)

- 건물신축 (1건) : 건물 72,457.6 m^2

○ 처 분(1건)

- 매 각 (1건) : 토지 511 m^2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낙후된 서남권 지역의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로구 고척동 63-6번지 일대에 서남권 돛야구장 건물(72,457.6㎡)을 신축하고, 강동구 천호동 소재 (447-12 외 1필지) 사유 일반재산(511㎡)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다.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계상재산 (목록 : 별첨)

○ 취 득(1)

- 건물신축 (1건) : 건물 72,457.6㎡

○ 처 분(1건)

- 매 각 (1건) : 토지 511㎡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총괄표

구 분		당 초 계 획			제2차 변경계획			계			
		건수	면 적(m ²)	금 액(천원)	건수	면 적(m ²)	금 액(천원)	건수	면 적(m ²)	금 액(천원)	
취 득	계	토지	3	8,368.5	19,300,775	-	-	-	3	8,368.5	19,300,775
		건물	8	88,536.1	148,968,377	1	72,457.6	140,058,000	9	160,993.7	289,026,377
		공작물등	-	-	-	-	-	-	-	-	-
	매입	토지	3	8,368.5	19,300,775	-	-	-	3	8,368.5	19,300,775
		건물	-	-	-	-	-	-	-	-	-
	신·증축	건물	7	60,792.5	138,823,126	1	72,457.6	140,058,000	8	133,250.1	278,881,126
	기부채납	토지	-	-	-	-	-	-	-	-	-
		건물	1	27,743.6	10,145,251	-	-	-	1	27,743.6	10,145,251
	교환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공작물등 설치	공작물 등	-	-	-	-	-	-	-	-	-	
처 분	계	토지	-	-	-	1	511.0	2,789,680	1	511.0	2,789,680
		건물	1	5,534.0	3,568,287	-	-	-	1	5,534.0	3,568,287
	매각	토지	-	-	-	1	511.0	2,789,680	1	511.0	2,789,680
		건물	-	-	-	-	-	-	-	-	-
	교환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멸실	건물	1	5,534.0	3,568,287	-	-	-	1	5,534.0	3,568,287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요약

구 분			내 역			세 부 내 용
			건 수	면 적(m ²)	금 액(천원)	
취득	건물	신축	1	72,457.6	140,058,000	○ 서남권 돛야구장 신축
처분	토지	매각	1	511.0	2,789,680	○ 시유 일반재산 매각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내용 및 방법	취득대상자	비 고
		구	동	번지						
계	토지 건물				72,457.6	140,058,000				
1	건물신축	구로구	고척동	63-6 외 10필지	72,457.6	140,058,000	2013	서남권 돘야구장 신축	체육진흥과	

처분대상재산목록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면 적	기준가격	처분 시기	처분내용 및 방법	소관부서	비 고
		구	동	번지						
계	토지				511.0	2,789,680				
1	토지 매각	강동구	천호동	447-12 외 1	511.0	2,789,680	2011	시유 일반재산 매각 (수의계약)	공유재산과	